



센유노동조합



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(노사협력담당관)

제목 시설관련 사업비 학교교부시 목적사업업무추진비 계상 명시 협조 요청

1. 관련

가.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 계획 알림(교육재정과-18466, 2018.8.27.)

나. 서울특별시교육감-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제22조 [시설사업 업무추진비 반영](2022.4.14.)

2.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3. 최근 학교 공사물량 증가로 1억원 이상의 학교 자체공사도 교육지원청에서 대집행을 못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여 실질적인 학교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,

4. 각급학교에서 시설사업 추진 시 업무추진비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이 이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
5. 이에 2025년 하반기 시설관련 목적사업비 교부 공문 시행시 목적사업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음을 사업주관부서에 명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예: 50만원 한도까지 교부예산액 대비 1%를 목적사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가능].
끝.

※ 본 공문은 노사협력담당관, 교육재정과, 교육시설안전과,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, 학교시설지원과로 발송되었습니다.

SEN_U 노동조합



제출자 2025.07.10.
김응희

시행 M00043-019689 (2025. 07. 10.) 접수

우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74 (용산동2가) 노조사무실 / <https://senunion.kr>

전화번호 070-4000-3800 팩스번호 / senunion@naver.com / 비공개(6)